

7. 都市計画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건설부령 제471호 1990. 10. 31.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차목 중 “100제곱미터 이하”를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항동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종묘배양장: 해태, 미역 등의 종묘 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1가구(양식면허를 소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당 기존 종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의 증축: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서

지하층이 없는 경우의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1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러목 중 “서울특별시 둔촌동에 설치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마. 교정시설의 이축·증축과 구치소의 신축

제7조 제1항 제3호 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동호에 누목 및 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행정구역(경찰서 등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구청·군청·경찰서 등 시·군·구 단위 공공청사(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구역 외에는 적정한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농업협동조합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휴식시설(잔디광장·피크닉장·청소년수련시설 등)과 그 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

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의 나대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외의 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 라목 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송유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바목 중 “무연유류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의 증설”을 “주유기보호시설의 설치와 무연유류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의 증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

영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개축”을 “증축·개축”으로 한다.

제8조 제3호 중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시화지구개발사업 및 부천중동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다만, 다른 법령에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따로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추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던 버섯재배사를 300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락공동시설로서만 설치가 가능하던 종묘배양장을 개인시설로서도 10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1호 차목 및 파목).

나. 주택의 증축에 있어 지금까지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가능하던 것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서 지하층이 없는 경우에는 117제곱미터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증축은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7조 제3항 제1호).

다.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군·구 단위 공공청사는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구역외에는 적정한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외의 다른 도시에도 보훈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범위를 확대함(제7조 제1항 제3호 러목 및 버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잔디광장·피크닉장 등의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3호 누목).

마.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석채취가 필요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허용함(제8조 제3호).

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외에 개발제한구역내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3호).

〈건설부 제공〉